



원유가(原乳價)는 적절한가?

서울우유협동조합 지도부
부장 이 만 재

어느 나라든 낙농업이 존재하는 나라에 있어서 낙농정책의 기본구상은 “모든 국민에게 보다 싼 값의 우유를 충분히 먹일 수 있도록 자급(自給)한다.”는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열대지방의 대부분 나라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와 같이 낙농이 없는 나라에서는 싸면 싼대로 비싸면 비싼대로 국제 거래시세에 따라서 혹은 그 나라의 재정상태나 국민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분유와 버터오일을 사서 물에 타 먹으면 그만이지만 낙농을 할 수 있는 위도에 위치한 국가들은 아무튼 자기네 나라안에서 우유를 충분히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싱싱하고 깨끗한 우유를 싸게 먹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농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산업을 다루는 정책구상이 낙농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원유(原乳)를 가공, 유통시키는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유가공종사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다 같이 생각하는 고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낙농진흥을 위한 정책구상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싸고 싱싱한 우유를 충분히 자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데서 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낙농산업에 종사하는 낙농가나 유가공 및 그 유통에 참여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국민 대다수인 소비자와 더불어 공동체적 개념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원유의 가격이 적절한가라는 질문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모든 낙농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원유가격

결정과정이나 수준도 마찬가지이다. 원유의 가격을 자유경제체계에 맡겨 두어 공급/수요의 균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정부나 그에 준하는 공권력의 통제하에 두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 바탕에는 낙농업의 특성이 깔려있다. 우유생산의 장기성, 대량성, 계속성 그리고 우유라는 상품(商品)의 부패성 때문에 공급/수요의 균형에 따른 가격형성이 생산농가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자칫 맞지 않을 경우 생산기반의 붕괴로 재생산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또 다시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농업이 존재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국가간의 유제품에 대한 거래통제, 즉 수출입 창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만일 수입 개방(輸入開放)을 할 경우 정부의 우유가격지지(牛乳價格支持)정책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게 된다.

그래서 낙농생산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우유 가격지지제도와 유제품의 수입억제 내지 통제제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유가격지지제도의 또다른 측면은 낙농이란 것이 모든 농업작목 중에서 가장 노동조건이 열악(劣惡)할 뿐 아니라 국민의 보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식품을 생산하는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모든 국민에게 싸고 싱싱한 우유를 충분히 먹이기 위해서” 이 제도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유의 가격지지수준을 어느정

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자.

우선 앞에서 언급한 몇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면, 첫째, 국민에게 싱싱하고 값싼 유제품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반드시 자국내(自國內)에서 원유를 생산하도록 해야 하며,

둘째, 자급(自給)을 하기 위해서 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낙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격지지제도가 필요하며 또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유제품의 수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요약(要約)된다.

결국 낙농가의 소득보장수준을 어느 선에서 해주는가가 문제의 초점으로 보인다.

여기서 잠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보고 우리의 것을 검토해 보자.

미국의 경우는 농가의 생산물 가격과 생활비(生活費)와의 비율(比率)로 정하는 패리티(Parity) 가격을 기초로 원유가격을 결정한다. 패리티의 본래 뜻은 균형, 평등을 의미하는데 만일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에 대하여 100%의 패리티가격을 받는다면 그들이 판매한 일정량의 원유 대금으로 특정한 기준연도에 같은 량의 원유판매대금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량의 공산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경우 특정한 기준연도는 1910~1914년으로 이 시기는 미국역사상 농업황금기로서 농업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소득과 격차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었던 시기이며 이 시기를 택한 정책적 배려는 농가 소득보장에 대한 의지로 평가된다. 따라서 패리티 가격은 낙농가 수취가격인 원유가격의 구매력을 유지시켜 농가의 생활수준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다. 만일 우유생산비와 낙농가의 생활비가 10% 올라가면 원유의 농가수취가격도 그만큼 올라가야 같은 수준의 패리티, 즉 구매력과 생활수준이 유지되는 것이다. 패리티 가격결정은 해마다 두번씩 조정토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원유의 가격지지제도(價格支持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이 제도의 유지와 효과를

위하여 잉여시(剩餘時) 무제한 정부재정에 의한 수매비축(收買備蓄)과 방출, 유제품의 수입종량할 당제한 및 상쇄관세 부과등의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또 미국은 다자간무역협정(MTN)에서 전유제품을 할당대상으로 하여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유제품수입자유화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구주공동체(EC)는 낙농생산기반의 안정유지와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기증한 가격지지 및 생산지원 등의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라 우유가격 지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동농업정책의 핵심 요소가 가격지지제도인데 그 특징은 역내단일시장 및 가격, 역내생산보호(域內生産保護), 농업지도보증기금(FEOGA)에 의한 공동재정 등으로서 우유에 대한 가격지지는 목표가격, 경계가격, 개입가격(介入價格)등을 탈지분유, 버터, 치즈등의 유제품에 설정하여 역내 낙농산업안정유지와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장을 기본낙농정책으로 하고 있다. 역내 시장가격(域內市場價格)이 목표가격을 하회할 때는 개입가격으로 무제한 수매하면서 민간저장에 대하여 보조하는 한편 잉여유제품의 수출축진을 위해 수출보상제(輸出補償制)를 채택하고 있다. 역외(域外)로 부터의 수입분에 대하여는 경계가격과 수입국제가격과의 차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한다. 우유 생산비와 일정한 낙농소득을 보장해 주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목표가격은 매년 1회 농무장관협의회에서 심의된다. 수입유제품에 대하여 경계가격(境界價格)과의 차액을 징수한 과징금의 비율을 관세로 환산하면 대체로 150~300% 나 되는 엄청난 고율(高率)로서 결국 역내 가격이 국제거래시세보다 1.5~3배가 비싸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일본도 구주공동체와 비슷한 안정지표 가격과 매년 심의되는 정부의 보증가격등의 설정으로 그 부족되는 차액을 정부가 지불해주는 부족분지拂제도(不足分支拂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우리나라의 그중 미곡 가격제도와 같이 농가수취원유가격은 해마다 검토된

전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비싸게, 소비자 가격은 싸게 그리고 그 차액을 정부재정으로 충당하는데 그 비율은 우유소비자 가격의 약 30%나 된다. 이 나라들도 물론 유제품의 수입은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국들은 모두 전국을 일원화한 우유판매조합(Milk Marketing Board)을 법적보호하아래 설립하여 여기서 낙농가의 소득이 타산업종사자의 평균 소득개념으로 보상되는 수준에서 유대를 결정하고 그 근거는 매년 실시하는 학계와 조합의 공동 낙농 경영조사결과에 두고 있다. 조사된 생산비와 소득의 결과가 목표소득의 보장이 되지 않으면 유대에 약 14-25%를 직접 보조한다. 이들 국가들도 역시 유제품의 수입은 자유화 또는 개방하지 않고 있다.

제한된 지면으로 더 자세하고 더 많은 사례를 설명할 수는 없으나 아무튼 모든 낙농국들의 공통된 낙농정책은 가격지지정책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기준은 낙농가에 대한 소득보장에 두고 매년 1~2회 재심의하며,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유제품수출입의 엄격한 제한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우유가격지지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각국 정부로 많은 재정출연(財政出捐)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고 그 돈은 결국 모든 국민의 납세로 모아진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우유가격지지제도와 유제품의 엄격한 수입제한 조치가 올바르게 채택되고 있다.

다만 가격지지의 목표설정이나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점. 그리고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는점 등이 다른 낙농국과 같지 않다. 그래서 우유가격의 인상요구가 반드시 농민의 입에서 먼저 나오고 일정한 기간이나 기준이 없이 한참 동안 왈가왈부 한 연후에 생산비만 보상하는 수준에서 검토되고 그것이 다시 물가정책차원에서 역시 공산품·서비스 산업 위주의 물

가정책을 토대로 적절히 조절되어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과정이 매우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이란 점을 행정당국이나 농민이나 소비자나 모두 알면서도 시원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낙농산업의 구조적모순도 있고 낙농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도 있다고 본다.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철학과 이해부족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야기를 본고의 컷머리로 되돌아가서 낙농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과 소비자와의 관계가 공동체적 개념에서 그 존재가치가 성립되고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낙농산업의 구조가 잘 유지될 수 있음을 다시 생각해 보자.

가령 예를 들어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나 구매능력이 두배이상 늘어났을 때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의 소득수준은 제자리에 있다면 낙농가들이 공동체적 개념(共同體의 概念)에서 국민보건을 생각하고 고생스럽지만 참고 견디며 우유를 계속 생산할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우유를 가공하고 판매하는 유업체의 수익이 연간 수십억씩되고 우유를 배달하는 보급소장은 느긋한 자세로 자가용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데 손바닥이 발바닥처럼 굳은 살이 박히도록 열심히 해도 몇년전이나 지금이나 수입이 제자리라면 낙농을 계속할 희망이나 용기가 있을 수 있는가? 대부분의 소비자가 도에서 살면서 우유값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고 생각된다면 그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지지가격제도의 유지와 복지후생제도에 투입되는 재정비용을 세금으로 더 납부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유가격보다 싼 나라들의 낙농가들은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정부재정이나 국민의 납세분담금에 의해 충당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 낙농가들은 유대의 일부로 그러한 비용(교육, 의료, 보험, 퇴직연금등)을 지불해야되는 입장이고 그러한 차이가 25~40%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낙농가들의 유대수입수준은 오히려 다른 낙농국보다 낮은 것

이다.

자유시장의 가격기구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원유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적절한가 여부는 - 그래서 낙농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같이 비슷한 수준의 생활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균형있는 배분과 성장이 가장 바람직한 척도가 아닌가 한다.

지난달 낙농경영실태조사에서 부산·경남지방의 어느 낙농가가 도시 생활하는 자기 친구들의 아이들이 피아노나 미술학원에 다니지만 자기 아이는 학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자탄과 경기지방의 젊은 낙농가의 딸아이가 자기집이 너무 초라해서 그림을 그리기 싫다는 말에 가슴아파하는 모습은 낙농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한번에 쓸어버리는 장면들이었다. 더구나 충남의 어느 젊은 영농후계자는 목장을 모범적으로 경영한다하여 정부나 지방기관에서 상금도 여러번 받았지만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전업(轉業)을 계획하고 있다는 분노에 찬 목소리는 현재의 낙농 경영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었다.

위의 세농가는 모두 목장을 훌륭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물론 모든 낙농가가 성실하지는 못하다. 게으르고 지저분한 농가도 있지만 그런 낙농가까지 소비자가 먹여 살릴 필요는 없다. 능률적이고 고도의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 깨끗하게 목장을 경영하는 낙농가라면 적어도 도시근로자 만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되어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우리들의 2세와 우리자신들이 싱싱하고 값싼 우유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기를 제청하는 바이다.

여기 한가지 덧붙인다면 유업체의 경영개선과 능률화, 유통구조의 개선, 우유에 대한 공동홍보 등으로 가공에서 유통에 투입되는 비용 중 낭비요소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이 가장 요청되는 때이므로 최근 낙농가의 생산성 향상노력과 그 결과에 맞먹는 유가공업체의 노력도 뒤따라 준다면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경쟁력 확보도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점이다.

